어획증명제도 설명자료 (Q&A)

2017. 6. .

해 양 수 산 부

본 자료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Tel) 044-200-5368, 5371 / (Fax) 044-200-5379

ㅇ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Tel) 051-400-5740~1 / (Fax) 051-400-5745

ㅇ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FMC)**
(Tel) 051-410-1402 / (Fax) 051-410-1409

목 차

Ⅰ. 어획증명제도 일반 ····· 1

■ 어획증명제도 시행 개요 ····· 3

■ 어획증명제도의 개념 ····· 5

■ 어획증명 대상 어종 ····· 5

■ 대상 어종 이미지 ····· 6

■ 어획증명제도 도입 배경 ····· 7

■ 어획증명제도 시행 목적 ····· 8

■ 어획증명제도 도입 법적 근거 ····· 11

■ 시장국 조치 사례 ····· 14

Ⅱ. 서아프리카 수출국 관련 ····· 17

■ 어획증명서 발급 지연 및 카누조업 관련 ····· 19

■ 기술지원 등 요구 관련 ····· 21

Ⅲ. 어획증명제도 운영 관련 ····· 23

■ 어획증명서 신청·발급·제출 ····· 25

■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어획물에 대한 어획증명서 발급 ····· 28

■ 어획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 28

Ⅳ. 어획증명서 미제출시 처리방안 ····· 31

■ 기본원칙 ····· 33

■ 조업선의 경우 ····· 33

■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의 경우 ····· 35

■ 환적 화물을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경우 ····· 36

Ⅴ. 제3국 수출 및 수출상대국 합의 관련 ····· 38

■ 제3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 40

■ 상대국 합의 및 시행시기 유예 등 ····· 40

<참고자료> ····· 44

■ (참고 1) 대한민국 어획증명서 서식 ····· 46

■ (참고 2) 간편어획증명서(소형선박용) 서식 ····· 48

■ (참고 3) 수출국 기관정보 서식 ····· 53

■ (참고 4) 서아프리카 민어류 수입 동향 ····· 54

■ (참고 5) 북태평양 꽁치 수입 및 수급 동향 ····· 55

■ (참고 6) 2017년 서아프리카 연안국 ODA 사업 추진 현황 ····· 56

■ (참고 6-1) 수산 ODA 물자지원 실적 ····· 56

■ (참고 6-2) 2018년 서아프리카 연안국 ODA 사업 추진 계획(안) ···· 57

■ (참고 7) 국가별 어획증명서 발급 담당기관 정보 ····· 58

Ⅰ. 어획증명제도 일반

어획증명제도 시행 개요

❍ **대상 어종** : ① 긴가이석태 *(영문명 Bobo Croaker, 학명 Pseudotolithus elongatus)*
② 영상가이석태 *(영문명 Longneck Croaker, 학명 Pseudotolithus typus)*
③ 꽁치 *(영문명 Saury, 학명 Cololabis saira)*

❍ **가공 형태** : **냉동품**(HSK Code 0303류), **신선냉장품**(HSK Code 0302류)

* 제품 외관상 「**원형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것

❍ **시행 시기** : **2017년 6월 30일 부터**

* 해외 수역에서 대상 어종을 포획·채취한 시점(6.30 이후 조업분) 기준

❍ **어획증명서 제출**

- **(제 출 자) 대상 어종을 적재하고 입항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해운대리점**

- **(제출시기) 국내 입항신고 시(입항 24시간 전까지)**

- **(제출방법) Port-mis**(항만운영정보시스템) 또는 **PLISM**(EDI 중계망 사업자서비스) 이용 입항신고 시 어획증명서 첨부

* 조업선 척당 어획증명서 1부(소형선박에 의한 어획물은 간편어획증명서 첨부)

- **(제 출 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국 14개 지원)

* **어획증명서 미첨부 시 : 입항금지 또는 양륙금지**. 다만, 타 화물과 혼적한 상태로 입항한 경우 예외적으로 양륙 허용(통관은 불가)

* 외국과 체결한 협정 등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 등 **"유사 증명서" 대체 불가**

Ⅰ 어획증명제도 일반

어획증명제도의 개념

(질문 1) 「어획증명제도」란?

☞ **조업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서 동 선박의 어획물에 대해 조업일지, 항적기록 등을 검토하여 **합법어획 여부**를 **판단**한 후 합법어획물에 대하여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

< 어획증명제도 도입 현황 >

* EU : IUU어업 근절을 위한 **「IUU 통제법」** 제정('08), 시행('10.1~)
*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 : CCAMLR('00)(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 ICCAT('01)(대서양참다랑어보존위원회), CCSBT('08)(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 러시아산 게류 수입시 '러' 당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첨부('14)

어획증명 대상 어종

(질문 2) 어획증명서 제출 대상 어종은?

☞ 어획증명제도 대상 어종은 민어류 중 **긴가이석태, 영상가이석태, 꽁치**

<참고사항>

* 「서아프리카 민어류」: 2013년 우리나라가 EU로부터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받은 원인을 제공한 어종

* 「북태평양 꽁치」: 불법어획물 반입 정보에 따라 2016년 말 항만국 검색 실시한 어종

대상 어종 이미지

- **(민어류)** 서아프리카 해역 생산, 대부분 우리나라에 수입

○ **긴가이석태** ('16년 수입량 약 8,786톤)

- 침조기로 불리며, 서아프리카 연안을 따라 분포하는 연안성 어류로 수심 50m 바닥 펄에 서식. 최대 45㎝까지 성장하나 일반적으로 30㎝내외. 저층트롤과 정치망 어업으로 어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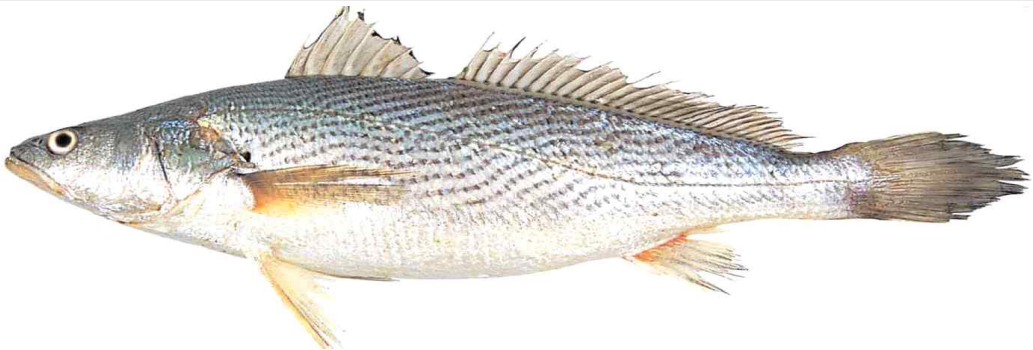

○ **영상가이석태** ('16년 수입량 약 8,847톤)

- 민어조기로 불리며, 서아프리카 연안을 따라 분포하고 수심 150m 정도의 펄이나 모래바닥(주로 수온 18℃ 정도의 60m 이내 수심)에 서식하고, 저층트롤과 정치망 어업으로 어획

* 농어목 / 민어과 / 가이석태속 어류

- **(꽁치)** 북태평양 대만산이 우리나라 수입량의 **91%**를 차지

○ **꽁치** ('16년 수입량 약 42,075톤)

- 미국과 아시아 사이의 북태평양 해역에 광범위하게 분포. 크기는 25㎝~40㎝이며 봉수망 어업과 유자망 어업의 주요 어획대상임

* 동갈치목 / 꽁치과

어획증명제도 도입 배경

(질문 3) 민어류(긴가이석태, 영상가이석태)와 꽁치에 대해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 해외수역에서 **불법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유통 차단** 목적임

우리나라는 예비 IUU어업국으로부터 해제('15.4월) 되었지만 서아프리카 수역에서 잡히는 **민어류**와 북태평양 **꽁치**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수출국·NGO로부터 우리국민 또는 제3국적선에 의한 **불법어업 혐의**가 **지속 제기**되는 등 **국제적 문제**로 대두

이에 따라 꽁치, 민어류의 주된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 **3개 문제어종**에 대해 **「어획증명제도」**를 도입, **「시장국 조치」**를 **강화**하므로써 **불법어획물 유통**을 **사전 차단**하려는 것임

☞ 2016년 FAO **'항만국 조치협정(PSMA)'**
- 공통적으로 기국에게 IUU어업 방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부여하고, 항만국 및 시장국에게도 국제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관할권(항만국 조치, 시장 관련 조치)을 활용, IUU어업근절 조치 요구

☞ FAO **'IUU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행동계획(IPOA-IUU)'**
- 기국, 연안국, 항구국, 시장국 및 자국민통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 IUU어업 근절 조치 요구

어획증명제도 시행 목적

(질문 4) 「어획증명제도」 시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 2013년도에 우리나라가 EU로부터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받게 된 계기는 외견상 우리 원양어선들의 서아프리카 수역 불법조업, IUU 처벌·통제 시스템 미흡이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해당 수역 주 어종인 민어류(**긴가이석태**, **영상가이석태**)임

- 이와 관련, 우리정부의 기본 입장은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의 **원인**을 **제공**한 **「문제 어종」**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코자(**수입을 받지 않겠다**) 하는 것임

- 따라서, 해당 어종을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조업선이 등록된 국가의 권한있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어획증명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하여야함

☞ 이러한 조치는 EU와 미국으로부터 각각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받은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가 법·제도 정비, 조업감시센터 설치, 원양어선 감척 등 조치에도 불구, **IUU 국가 재지정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원양업계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 국가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시장국 조치」**임

- FAO의 **「어획증명제도에 대한 자발적 지침」**마련 등 국제사회도 동 제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 중인 바, 수출국과 수출자, 수입자 등 관련업계 모두가 이러한 **분위기**를 조기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여야만 **지속가능한 조업** 및 **수산물 교역**이 가능할 것임

(질문 5) 「어획증명제도」 시행 필요성은?

☞ **우리 정부의 예비 IUU 어업국 지정과 극복 노력**

- 우리 정부는 미국·EU의 **예비 IUU어업국 지정('13)**을 계기로 우리 원양어선 및 자국민에 대한 **IUU 근절대책**을 강력하게 추진 중

- **「원양산업발전법」 개정**('14.1, '15.7), **조업감시센터(FMC) 구축·운영** 등을 통해 우리 원양어선에 의한 **IUU 어업**은 현저히 **감소 추세**

- 특히, 서아프리카 수역 **원양어선 감척사업**(10척) 및 **VMS**(어선위치 추적장치)를 이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어업 개연성 대폭 감소**

☞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어획물 반입 지속**

- 정부의 IUU 근절 노력 불구, **민어·꽁치** 등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 또는 **제3국적선**에 의한 **불법어획물 반입** 시도 지속

- 특히, **서아프리카**의 경우 **한국인**이 국적선 2척('17.6월 직권말소) 및 시에라리온 국적 소형 어선 5척의 **실질적 운영자**로 **IUU 어업 지속**

☞ **자국민에 의한 불법어업 행위로 국제사회의 관심과 비난 고조**

- **EJF(환경정의재단)** 등 **국제 NGO**는 우리 국민에 의한 어선 국적변경·용선 등 편법을 동원한 **서아프리카 수역 불법어업 문제 지속 제기**

- **시에라리온 언론**은 **한국 선박**이 외국인 조업제한 수역(IEZ)에서 **IUU어업**을 하면서 현지 어민들의 어구 등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도

☞ **불법어획 꽁치 국내 수출 시도(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등장)**

- **대만 꽁치 조업선** 및 대만 자본이 투자된 **바누아투 국적 꽁치 조업선들**이 허가 없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여 **불법 어획한 꽁치**를 **우리나라에 수출 시도('16년)**

  * 대만산 꽁치는 '16년 기준 국내 수입꽁치의 **91%** 차지

☞ **국제사회의 어획증명제도 기준 마련(국제사회의 압박 강화)**

- **EU·FAO**는 **기국**에게 IUU어업 방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부여하고, **항만국** 및 **시장국**도 국제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관할권(항만국 조치, 시장관련 조치)**을 활용 IUU어업 근절 조치 요구

- **(FAO)** IUU 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협정」**, **「IUU 예방·방지·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IPOA)」**, **「어획증명제도에 대한 자발적 지침(안)」**등을 마련하고 **관련국**에 **필요한 조치 이행** 촉구

- **(EU) 「IUU 통제법」** 제12조에 따라 **IUU 어업**에 의한 **수산제품 수입 금지**

☞ 불법어획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미이행 시, "IUU 어업국 재지정" 위기 가능성**

- 우리정부는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을 극복**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법·제도 정비, 조업감시센터 설치** 등 다각적인 조치 이행

-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모범 원양어업 국가**로 거듭난 현 상황에서 지속적인 불법어업 행위와 국제사회의 규제강화 등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예비IUU 어업국으로 **"재지정"** 받을 가능성 높음

  * IUU 국가로 **최종 지정**받을 경우, EU 및 미국으로의 수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연간 약 6,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이에, 원양어선 관리감독과 함께 민어·꽁치 등 **IUU어업 통제 취약국** 불법어획물의 **유통 차단**을 위한 강력한 **『시장국 조치』** 필요

어획증명제도 도입 법적 근거

(질문 6) 「어획증명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근거는?

<국제법적 근거>

○ FAO, EU 등 국제사회는 IUU 어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IUU 어업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 중

① FAO는 IUU어업 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협정」** 채택('09.11.22)

> "이 협정의 당사국들은..... **시장관련조치**.....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따라 활용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

② FAO 수산위원회(COFI)는 **「IUU 예방·방지·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IPOA)」**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회원국에 필요조치 촉구

* **우리정부**는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IPOA)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을 수립('05)하고 수정안을 **FAO 사무국**에 제출('14.10)

> 한국 IUU어업의 예방·억지·근절을 위한 NPOA는 다음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 1. IUU어업 근절을 위해 기국의 책임.... **시장국 조치**.... 등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한 포괄적·종합적 접근

③ FAO는 **「어획증명제도에 대한 자발적 지침(안)」**을 마련('16.4월), 동 지침안에 대한 기술협의 진행 중

* 개별국 또는 RFMOs가 어획증명제도를 도입코자 할 경우 표준으로 활용

> 본 지침은 **IUU 어업으로 어획한 수산물이 국내 및 국제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어획증명제도를 개발, 이행, 조율 혹은 검토할 때 도움을 제공.....

④ EU는 **「IUU 통제법」** 제12조에 따라 IUU 어업으로 획득한 수산제품의 수입 금지

1. IUU 어업으로 얻은 수산제품의 EC내 수입은 금지된다.
2. 제1항의 금지조항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EC 내로 수입되는 수산제품은 본 규정에 따르는 어획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내법적 근거〉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17.6.30. 시행)

- 해외수역에서 발생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방지** 및 **불법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합법 어획을 증명하는 **「어획증명서」 첨부 의무화**(안 제23조제1항제3호 신설)

-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현행 **고시에 규정**된 **지역수산기구 및 러시아 수역 관리어종**(다랑어, 게류 등) **적재선박이 합법어획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 제출 규정을 시행규칙에 포함** 개정(안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입항 신고 및 항만국 검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외 어획물 적재선박 입항신고서(이하 “입항신고서”라 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제23조(입항 신고 및 항만국 검색) ① ---------- ---------- ---------- ---------- ----------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경우: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어종에 대한 어획증명 관련 서류	1. ---------- 어획증명에 관한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하여 관리하는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해외수역에서 포획·채취한 꽁치, 긴가이석태 또는 영상가이석태를 적재한 경우: 해당 어종을 포획·채취한 선박의 기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어획증명서. 다만, 해당 선박의 총톤수가 20톤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간편 어획증명서를 말한다.

시장국 조치 사례

(질문 7) 「어획증명제도」와 유사한 시장국 조치 시행 사례는?

〈 한국의 대만산 수입꽁치 적재선박 항만국 검색 〉

○ 실시 배경

- **대만 꽁치어선**(약 90여척)이 **러시아 및 일본 EEZ**에서 불법조업한 어획물이 **대만 당국 통제 미흡** 등으로 **우리 시장**에 **반입**

* **우리나라 꽁치 업계는** 대만산 불법 꽁치 수입, 일본 EEZ 조업제한 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강력한 **항만국 검색 실시를 지속 요구**

○ 시행 개요

- **기　　간** : '16.10.26 ~ '17.1.16
- **대　　상** : **대만** 및 대만 자본이 투자된 **바누아투**(태평양 도서국) 국적 조업선이 어획한 **꽁치 적재 선박**(조업선 및 운반선)
- **검색비율** : 검색 기간 중 입항하는 대상 선박의 100%

○ 실시 결과

- 총 34척/35건에 대해 조업허가, 조업일지, VMS 항적기록 등 **조업 관련 정보(대만 제공) 확인 후 29척 30건 통관**

* 꽁치 총 검색물량 8,983톤('16.12.19. 기준)중 **8,125톤(90.4%) 통관 완료**

- 조업정보 **미확인 5척(858톤) 전량 반송 조치**

○ 시사점

- 대만 꽁치 어선의 **불법조업**과 **불법어획물**의 공공연한 **국내 반입 및 유통** 실태에 대해 **시장국(소비국·수입국) 입장**에서 단호하게 대처
- 꽁치 불법어획물 반입차단을 위한 항만국검색은 매우 **시의적절**하였으며, **IUU어업 근절의지 전달** 및 **수출국에 경고** 등 성과 달성
- 이와 같은 관점에서 **어획증명제도**는 향후 **국제수산물 유통의 표준**이 될 것이며 모든 당사국과 유통업계가 **지향**해야 할 **목표점**

〈 미국의 『수산물 수입 감시 프로그램 SIMP』 시행 〉 ('18.1월 시행예정)

○ 개 요

- 美 **해양대기청**(NOAA)는 불법어업 및 수산물허위 표시에 취약한 **13개*** **어종**에 대해 수산물수입감시프로그램(SIMP) 적용 계획

* 관리대상 어종 : 전복, 대서양 대구, 대서양 붉은 대게, 만새기, 능속어속 어류, 붉은 왕게, 태평양 대구, 물퉁돔, 해삼, 상어, 새우, 황새치, 다랑어류

- 이에 따라 수입업자는 수입수산물에 대해 **어획장소부터 미국시장 진입지점까지** 주요 관련 **자료 제시** 및 **보고 의무**

* 다만, 양식새우와 전복의 경우 적절한 보고 및 기록관리 요건이 확인되거나 갖춰질 때 까지 적용 잠정 보류

○ SIMP 주요내용

- SIMP는 불법어업 및 허위표시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특정 어류와 수산물 수입에 대한 **허가, 자료보고, 기록관리 요건**을 정하고 있음

- 수집된 자료를 통해 어획·생산의 합법 여부 확인을 위해 **미국시장 진입지점**에서부터 **어획 또는 생산 장소**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어종의 **어획 및 양륙 관련 자료수집**은 미 정부 수입·수출 자료 포털인 **국제무역자료시스템(ITDS)**을 통해 취합됨

- SIMP는 표시 프로그램(labeling program)이 아니며 소비자용도 아님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근거법인 **Magnuson-Stevens법**의 권한과 **ITDS의 엄격한 정보보안**에 따라 일반에 공개되지 않음

- 등록 수입업자(Importer of Record)는 어류 또는 수산물의 어획부터 미국 진입시점까지의 관리연속성을 위해 **기록 보관**이 **요구**되어짐

○ 시사점

- 동 제도는 "**FAO 항만국 조치 협정**" 발효*를 앞두고 미국에서 동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국 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

* 형식상 美 수입업자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수출자 및 수출국 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

- **EU**와 **미국** 등 **선진국**은 불법어획물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

- 우리나라도 이와같은 국제적 추세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제 수산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원양산업 퇴보**, **수출부진** 등 우려

〈 한국의 브라질산 닭고기 유통·판매 중단 조치 〉

○ 실시 배경

- 브라질의 최대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를 비롯, 육가공 업체들이 **공무원**을 **매수**해 유통기한이 지난 **부패고기**를 **유통**, 썩은 고기 냄새를 없애기 위해 금지된 **화학물질 사용**, 상당량 해외(한국 등) 수출

* '16년 국내에 수입된 닭고기 10만7399톤의 **82.8%**인 8만8995톤이 **브라질산**이며, 이중 절반가량(47.7%)인 4만2500톤이 문제의 BRF로부터 수입

○ 조 치

- **(식약처)** BRF로부터 수입된 닭고기 **유통·판매 중단**, **수거검사** 실시

- **(농림부) 현물검사 비율 강화**(1%→15%), 외교 경로를 통해 문제 **작업장에 대한 정보** 요청 및 정기 **수출작업장 점검을 앞당겨 시행**

○ 시사점

- 대상 분야는 다르지만 **정상적이지 않은(불법) 제품**에 대한 「**시장국 조치**」라는 점에서 **어획증명제도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

Ⅱ. 서아프리카 수출국 관련

Ⅱ 서아프리카 수출국 관련

어획증명서 발급 지연 및 카누조업 관련

(질문 8) 서아프리카의 경우 정부시스템이 취약하여 어획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대책은?

☞ 서아프리카 국가의 카누 관리방법에 대해 파악한 결과, **「시에라리온」** 및 **「기니」**의 경우 **정부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17.3.25.~4.1. 해양수산부 담당사무관 현지 출장 시 확인),

EU 사무총국에 의하면 세네갈, 앙골라, 모리타니아, 감비아, 모잠비크 등은 **EC 어획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갖추고 EU로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EU사례 연구를 통하여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카누조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임**

(질문 9) 서아프리카 연안국은 행정체계가 미흡하고 비정상적 관행이 만연하고 있어 교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재외공관 및 해양수산부 담당자 방문('17.3.25.~4.1.) 시, 상대국 대부분은 협조를 약속하였으나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 관행**에 대하여는,

국제워크숍, 국제사회 분위기 및 우리정부의 의지 전달 등을 통해 **교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질문 10) 서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이 문맹률이 높아 어획증명서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어획증명서는 여건상 **수출자(대부분 교민)가 작성**할 것이며, **정부 관계자**가 **내용확인 후 서명**하게 될 것이므로 문맹률은 문제되지 않을 것임

필요시, 현지 사정을 감안하여 고시 등에 **해당국 언어사용 근거 마련** 및 **불문(佛文) 서식** 배포방안 등 검토 계획

(질문 11) 서아프리카 카누조업의 경우 어획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경우 대책은?

☞ EC IUU 통제법 시행령에 의하면, **「간편어획증명서」** 서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우리정부에서도 카누조업 현실을 감안하여 EU의 예를 준용한 **「간편어획증명서」 도입**, 운용 중임(50쪽 참고 2)

예컨대, **카누**를 비롯한 **소형선박**은 간편어획증명서를 이용하되, 척수가 많아 기재가 어려울 경우 간편어획증명서에 **선박 리스트**를 **별첨**하는 방식으로 운영(선박명, 등록번호, 중량 등 기재)

※「간편어획증명서」 적용이 가능한 "소형선박"

- 기국 정부기관에 의해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어선으로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인 경우

기술지원 등 요구 관련

(질문 12)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EU로부터 조업감시 기술 등 지원을 받고 있어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 우리정부는 **2016년**부터 연안개도국의 **자립기반 조성** 및 **경제발전 지원**(ODA)을 통한 안정적인 해외 수산자원 확보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해 오고** 있음(56쪽 참고 6)

EU가 어획증명제도 도입을 위해 상대국에 기술적 지원 및 교육 등을 실시한 바가 있듯이 한국정부도 **ODA 사업**과 더불어 어획증명제도의 원만한 조기 정착을 위해 **상대국 방문, 교육**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2017년 사업계획

- 연안개도국 해양수산 기술 및 정책연수교육(세네갈 등 7개국, 2억원)
- 수산인프라 지원 및 관리기술 지원(세네갈, 4.4억원)
- 선원학교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세네갈 3.75억원)

※ 2018년 사업계획(안)

-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서아프리카 연안국에 조업감시시스템 개발 지원, 기술 및 경험 전수 등('18~'22년 까지 23.5억원 / '18년 8억원)
- 시에라리온 수산자원 평가('18~'22년 까지 105억원 / '18년 5억원)

Ⅲ. 어획증명제도 운영 관련

Ⅲ 어획증명제도 운영 관련

어획증명서 신청·발급·제출

(질문 13) 어획증명서는 누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는가?

☞ **(누 가)** 대상 어종(긴가이석태, 영상가이석태, 꽁치)을 적재하고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해운대리점**

(언 제) 입항 **24시간 전**까지

(어디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국 14개 지원)

(어떻게) Port-Mis(항만운영정보시스템) 웹 또는 PLISM(EDI 중계망사업자 서비스)을 통해 입항신고 시 **어획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질문 14) Port-Mis(항만운영정보시스템) 또는 PLISM(EDI 중계망사업자서비스)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른 신청방법은?

☞ 입항신고서와 어획증명서 등 첨부 서류를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에 신청 가능함

* 부산, 인천, 인천공항, 서울, 평택, 장항, 목포, 완도, 여수, 제주, 통영, 포항, 강릉, 전주

(질문 15) 어획증명서 하단의 "이송정보" 항목은 누가 작성하는가?

☞ **이송정보** 항목은 「참고 1」 어획증명서식 중 **15번 항목(수출자**

정보)에 기재된 수출자가 작성한 후, 조업선박이 등록된 국가(수출국)의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 제출하여 발급받아야 함

(질문 16) 당초 발급받은 어획증명서의 수입자 또는 이송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정정 발급을 받아야 하는가?

☞ **수입자 변경** 시, 최종 수입자는 어획증명서 상 **수입자와의 거래 관련** 서류를 입항신고 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송정보 변경** 시 수출자는 **정정 발급**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질문 17) 하나의 컨테이너 또는 한 척의 운반선에 여러 조업선의 어획물이 혼적되어 반입될 경우, 어획증명서 제출은 어떻게 하는가?

☞ 조업선이 등록된 국가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업선박별" 어획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함

소형선박의 경우 간편어획증명서 활용(세부사항은 20쪽 질문 11번 참조)

(질문 18) 조업선의 기국에서 다른 서식(원산지 증명서 등)으로 어획증명서 대체를 요구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가?

*例 : 러시아산 꽁치 수입 시, 기존 "게류 원산지 증명서"로 꽁치 어획증명서 서식을 대체하려는 경우 등

☞ 어획증명서는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드시 **"대한민국 어획증명서"** 서식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 등으로 **"대체 불가"**

* 러시아 게류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는 **한-러간 「IUU어업 방지협정」**에 따라 러시아 수산청에서 어획물의 **원산지**를 **증명**해 주기 위한 것으로,

1) 우리나라가 도입 준비중인 **어획증명서와**는 **다른 개념**이며,

2) **조업수역, 조업기간** 등 **조업정보 확인**이 **불가**하여 **불법어업**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어획증명서 대체 등 **예외**로 **인정할 수 없음**

(질문 19) 어획증명서 사본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 조업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어획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어획증명서가 **입항신고서에 첨부**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 **"사본"**일 수 밖에 없으므로 **인정**받을 수 있음

(질문 20) 연안국의 경우 에이전시 등이 통계문서 발급 등 국가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이 발급한 어획증명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 **조업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권한이 있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어획증명서만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정부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Agency**(한국정부에 공식 통보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도 **인정** 받을 수 있음

(질문 21) 어획증명서 서식은?

☞ **(46쪽 참고 1)**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어획물에 대한 어획증명서 발급

(질문 22)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어획한 대상 어종을 국내로 반입할 때도 어획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원양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해외어획물을 적재하고 국내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입항신고** 대상이며, **대상 어종**을 적재하였을 경우에는 **국적 불문, 어획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이 경우, 어획증명서는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FMC)에서 발급받아 입항신고 시 첨부해야 함

* 국제법상 **「동등성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어선에 대해 예외를 적용할 경우, 한국의 어획증명제도가 **「비관세 장벽」**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음

(질문 23) 우리 원양어선의 어획증명서 발급 신청은 언제 해야 하는가?

☞ 해외어획물 적재 선박 입항신고 시 대상 어종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 어획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입항신고 전**에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항 24시간 전까지 입항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어획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질문 24) 어획증명서의 원본 진위 여부 확인 방법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수출국(10국)의 **컨택포인트**를 이미 **확보**하였으며, 필요시 이를 통해 원본 **진위여부 확인** 가능

(질문 25) 어획증명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 어획증명서가 **정당하게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 국가(기관)**의 컨택포인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추가 요청**하여, 조업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권한있는 정부기관에서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함

Ⅳ. 어획증명서 미제출시 처리방안

Ⅳ 어획증명서 미제출시 처리방안

기본 원칙

① **(원칙)** 어획증명제도 대상어종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신고 시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입항 또는 양륙 금지"**

② **(예외)** 기타 화물과 혼적한 채로 이미 입항한 경우 예외적으로 **양륙**은 **허용**하되, 어획증명 대상 어종은 최종적으로 **"통관 금지"**

조업선의 경우

(질문 26) 조업선박이 대상 어종을 적재하고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하나 어획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는?

☞ 입항 신고 시 첨부되어야 할 어획증명서가 **누락**된 경우로, 대상 어종에 대한 어획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입항 금지"**

※ IUU통제법(안) 제14조(입항금지)

- 입항신고 시 제출한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을 하였거나 이에 협력 또는 지원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경우
- **어획증명서**등을 필요로 하는 어획물을 그 **증명서류 없이 적재한 경우**

(질문 27) 조업선박이 이미 입항하였으나 대상 어종에 대한 어획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 입항신청인과 항만공사에 **"양륙금지"**를 **통보**하고, **관할세관**에 **"통관금지"**를 요청하는 등의 필요 조치를 취함

> **※ IUU통제법(안) 제15조(양륙금지)**
>
> -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을 하였거나 이에 협력 또는 지원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 - 입항신고 시 제출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질문 28) 대상 어종을 적재한 선박이 급유, 선용품 보급, 병자인계 등 긴급한 사유에 의한 선원 하선 등의 목적으로 입항(외항)하고자 하는 경우, 「통과화물」임에도 어획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통과화물일 경우, 대상 어종을 적재하였다면 입항신고는 하되, **국내 반입은 하지 않으므로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컨테이너선의 경우는 입항신고도 필요하지 않음

(질문 29) 대상 어종을 적재하고 입항할 예정이나 국내 보세창고에 반입하지 않고 다른 선박으로 환적하여 출항할 예정인 경우는?

☞ **환적화물(TS)**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적하목록 및 선하증권)**를 입항신고 시 제출하면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질문 30) 대상 어종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 후 화물을 보세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추후 제3국 수출을 위해 출항하는 경우는?

☞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화물인 경우 일정기간 보세창고 보관 후 제3국으로 수출예정이라 하더라도 **BWT**(구매처가 정해지지 않은 미통관 물품)으로서 **국내 반입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획증명서 제출 필요**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의 경우

(질문 31) 대상 어종과 기타 어종을 혼재한 컨테이너선이나 운반선 등이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입항한 경우는?

☞ **컨테이너선**, **운반선**, **여객선**, **산적화물선**(벌크선)등에 대상 어종이 기타 어종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대상 어종에 대한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대상 어종**에 대하여는 **양륙 금지**
(기타 어종은 양륙가능)

☞ 아래의 경우, 어획증명서가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양륙이 가능**함

① 어창 하부에 적재된 기타 어종의 하역을 위해 어창 상부에 적재된 **어획증명 대상 어종의 先하역**이 **불가피**한 경우

② **1개의 컨테이너**에 대상어종과 **기타 어종**이 **혼재**되어 있어 **분리 하역**이 **불가능**한 경우 등

다만, 예외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통관 불가"**

(질문 32) 대형 컨테이너 선박 등은 화물 적재 내역을 세부 품명으로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냉동어류(Frozen Fish)"로만 표기하여 대상어종 적재여부를 알 수가 없어 의도하지 않게 신고를 누락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처벌을 받는지?

☞ 대상 어종을 적재하고 입항하였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누락 의도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처벌 대상**임

다만, 현재 **"항만국검색 시스템 기능고도화 사업"**이 추진 중인 바, 동 사업이 완료(8월초)되면 각각의 배선사가 **개별**로 **입항신고**가 가능하며, **세부 어종명** 및 **코드№**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 업무를 처리하는 업계의 **법 규정 준수 의지**이며, 정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

환적 화물을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경우

(질문 33) 대상어종을 제3국적선을 이용하거나 제3국에서 환적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할 경우는?

☞ **최종 목적지가 우리나라일 경우**, 동 어종을 최초 어획한 조업선이 등록된 국가의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BWT**(구매처가 정해지지 않은 미통관 물품)*의 경우도 동일

다만, 우리나라에서 환적(운송선박만 변경)하여 외국(EU등)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질문 34) 중국 어선과 우리 원양어선이 어획한 꽁치를 적재한 운반선이 입항하여 우리 원양산 꽁치만 하역하고, 중국산 꽁치는 그대로 싣고 나갈 경우 중국산 꽁치에 대한 어획증명서 첨부 여부는?

☞ 우리 원양산 꽁치의 경우, **조업감시센터(FMC)**에서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항신고 시 제출해야하며, **중국산 꽁치**의 경우는 증빙서류(선하증권) 제출 시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Ⅴ. 제3국 수출 및 수출대상국 합의 관련

Ⅴ 제3국 수출 및 수출상대국 합의 관련

제3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질문 35) 우리나라 원양어획물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에도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국에 제출해야 하는지?

☞ **수입국(예, EU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어획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입국에 제출**해야 함

(질문 36) 수입한 꽁치, 민어류 등을 중국 등 제3국에 수출할 경우 어획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수입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상 어종을 어획한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상대국 합의 및 시행시기 유예 등

(질문 37) 대상 어종 수출국과의 합의 등 사전조치 이행상황은?

☞ 1) **WTO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회람** 완료('17.2.1~현재까지)
2) **재외공관**을 통한 **해당 국가 방문 설명** 및 **협조 요청**
3) **업계 및 관계기관 설명회** 개최(**1차** '17.1.24. / **2차** '17.3.10. / 3차 '17.6.16.)

(질문 38) 우리 정부와 수출국간 사전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수출국 정부로부터 어획증명서가 제때에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대상 어종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신고 시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입항 금지"**

다만, 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WTO 회원국 회람, 상대국 방문 협조 요청, 업계 설명회(3회)** 등을 **기 시행**하였으며,

어획증명제도 도입이 수출국과의 **사전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요청 등 최대한 노력 계획**

(질문 39) 「어획증명제도」와 관련하여 합의가 진행 중인 국가에 대해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는지?

☞ 「어획증명제도」는 IUU어업에 취약한 꽁치·민어류에 대해 국내 반입 차단과 유통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써 이미 대내·외적으로 **회람, 협조 요청, 홍보** 등 **조치**를 **완료**한 바,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시행 시기 **유예 시**, 우리정부의 **불법어업** 근절 의지 의심, IUU 어업국 재지정 가능성 등 우려로 **"유예 불가"**

(질문 40) 바누아투(꽁치), 아프리카(민어류) 등 인프라가 미흡한 국가의 시스템 구축에 맞추어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는 없는지?

☞ 「어획증명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가 해당 어종의 소비시장으로서 (시장국 지위에서) **불법어획물**의 **반입**을 **차단**하는 **「시장국 조치」**이므로 시행시기를 **해당국 형편에 맞춰 시행**하는 것은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음**으로 **시행시기 조정 "불가"**

참고로, **수입업체**는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상대국 기관 파악 및 **어획증명서 발급절차에 관해 수출업체와 협의**하는 등 **자발적 노력** 필요

참 고 자 료

참고 1 대한민국 어획증명서 서식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대한민국 어획증명서
(THE REPUBLIC OF KOREA CATCH CERTIFICATE)

1.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2. 승인당국(기관명, 주소, 연락처) Validating authority(name, address, tel, fax)	
3. 조업 선박명 Name of the fishing vessel		4. 조업 선박의 국적 Nationality of the fishing vessel	
5. 조업 선박의 선장 Master of the fishing vessel	서명 Signature	6. 조업 선박의 운영자 및 연락 정보 Operator of the fishing vessel and contact details	
7. 어종 Species		8. 중량(kg) Weight(kg)	
9. 조업 기간 Period of the fishing operation		10. 조업 수역 Area of the fishing operation	
11. 조업허가 번호 Fishing authorization number		12. 조업허가 당국 Issuing authority of the fishing authorization	

13. 해상 전재 transshipment at sea			
조업 선박의 선장 Master of the fishing vessel	서명 및 날짜 Signature and date	전재날짜/지역/위치 Transshipment date/Area/Position	전재 중량(kg) Weight of catches transshipped(kg)
수취 선박의 선장 Master of receiving vessel	서명 Signature	수취 선박명 Name of the receiving vessel	수취 선박의 기국 Flag of the receiving vessel

14. 항구지역 내 전재 Transshipment within a port area			
이름 Name	당국 Authority	서명 Signature	주소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전재항구 Transshipment port	전재날짜 Transshipment date	날인 Seal(stamp)

15. 수출자 성명/서명/연락 정보 Exporter name/Signature/Contact details			
16. 당국 승인 Valid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성명/직위 Name/Position	서명 Signature	날짜 Date of validation	날인 Seal(stamp)

수입자 성명/연락 정보 Importer name/Contact details	※ 이송정보 Transport details	
	선박명 및 기국 Vessel name and flag	컨테이너번호 Container number(s) 목록 첨부 List attached

210㎜×297㎜[백상지(80g/㎡)]

(작성 요령)

(instruction for completing catch certificate)

1. 발급번호 : 해당 국가에서 부여하는 어획증명서 발급 번호를 기재합니다.

- 발급번호는 각 국가에서 결정하며, 승인당국이 작성합니다.

1. issuance number : the validating authority of the flag state of a fishing vessel produces an issuance number and fill in the blank for no. 1.

2. 승인당국 :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승인당국이 작성합니다

2. validating authority : the validating authority of the flag state of a fishing vessel enters the name, address and contact details of the issuing authority of a catch certificate.

<3~15까지는 수출자가 작성의 주체이며, 조업선 선장 및 전재를 받는 어선의 선장이 공동으로 작성합니다.>

<an exporter, a master of a fishing vessel and a master of a receiving vessel jointly fill in the blank from no. 3 to no. 15 >

3. 조업 선박명 : 어획증명서 발급 대상 어획물을 조업한 선박명을 기재합니다..

3. name of a fishing vessel: Fill in the name of the fishing vessel that has caught the fish subject to a catch certificate.

4. 조업 선박의 국적 : 3번의 조업 선박의 국적을 기재합니다.

4. nationality of a fishing vessel: Fill in the nationality of the vessel referred to in no. 3 above.

5. 조업 선박의 선장 : 3번의 조업 선박의 선장 이름을 기재하고 선장이 서명합니다.

5. master of a fishing vessel: Fill in the name of a master of the fishing vessel referred to in no. 3 above with a signature made by the master.

6. 조업 선박의 운영자 : 3번의 조업 선박의 실질적인 운영자를 기재합니다.

6. operator of a fishing vessel : Fill in the name of the operator of the fishing vessel referred to in no.3 above.

7. 어종 : 어획증명서 발급 대상 어획물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7. species: Fill in the name of the species of fish and/or fishery products subject a catch certificate.

8. 중량 : 수출되는 어획물의 중량(kg)을 기재합니다.

8. weigh(kg)t: Fill in the weight of fish and/or fishery products subject to a catch certificate in kilograms.

9. 조업 기간 : 어획증명서 발급 대상 어획물의 조업 기간을 기재합니다.

9. period of a fishing operation: Fill in a period during which fish and/or fishery products

subject to a catch certificate have been harvested.

10. **조업 수역** : 어획증명서 발급 대상 어획물의 조업 수역(관할 수역 국가명 등)을 기재합니다.

10. area of a fishing operation: Fill in an area in which fish and/or fishery products subject to a catch certificate have been harvested(the name of a country in whose waters catches have been taken and others).

11. **조업허가 번호** : 3번의 조업 선박의 조업허가 번호를 기재합니다.

11. fishing authorization number: Fill in the number of the fishing authorization or license of the fishing vessel referred to in no. 3 above.

12. **조업허가 당국** : 3번의 조업 선박의 조업허가 당국명칭을 기재합니다.

12. issuing authority of a fishing authorization: Fill in the name of the competent authority or organization of the vessel referred to in no. 3 above.

13. **해상전재(해당할 경우에만 기재)** : 조업선과 전재를 받는 운반선의 선장(또는 대표자)가 공동으로 작성 기재합니다.

13. Transshipment at sea(if applicable) : Masters or representatives of a fishing vessel and a receiving vessel jointly fill in the blank for no.1

14. **항구지역 내 전재(해당할 경우에만 기재)** : 전재가 일어난 국가조직에 따라 전재를 통제하는데 책임이 있는 권한 당국이 작성합니다.

14. Transshipment within a port area(if applicable) : The competent authority which controls transshipments in areas under its national jurisdiction fills in the blank for no. 14.

15. **수출자 성명 및 연락 정보** : 수출자의 이름, 서명, 연락 정보를 기재합니다.

15. exporter name and contact details: Fill in the name, the signature and the contact information of an exporter.

16. **당국 승인** : 승인권자의 성명·직위 및 승인날짜를 기록하고 서명한 후 승인당국의 stamp를 날인합니다. (승인당국이 작성합니다.)

16. validation by a competent authority: the validating authority of the flag state of the fishing vessel fills in the name and the position of an endorsing official and the date of validation. The validating official puts an official stamp or seal.

(수입자 정보 및 이송정보 작성 요령) - 수출자가 작성합니다.

(instruction to fill in the entries relevant to an importer and transport details) - an importer fills in

○ **수입자 성명 및 연락 정보** : 수입자의 이름 또는 상호명 및 연락 정보를 기재합니다.

importer name and contact details: Fill in the name of an importer or an importing company and contact information.

○ **선박명 및 기국** : 수출되는 어획물이 실린 운송선박명 및 선박의 국적을 기재합니다.
vessel name and flag state : fill in the name of a vessel which has onboard fish and/or fishery products to be exported and the flag state thereof.

○ **컨테이너번호 :**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 번호와 그 리스트를 첨부합니다.
container number : fill in the number of containers on board a ship and, if necessary, attach the list of the number of containers to a catch certificate.

참고 2 간편 어획증명서서식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대한민국 간편 어획증명서
(THE REPUBLIC OF KOREA SIMPLIFIED CATCH CERTIFICATE)

1.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2. 승인당국(기관명, 주소, 연락처) Validating authority(name, address, Contact details)
3. 어종 Species	4. 중량(㎏) Weight(㎏)

5. 어획물을 제공하는 선박 목록과 선박별 어획물 중량
List of vessels that provided catches and weight of catches by each vessel (name, registration number) :

선박명 Vessel name	등록번호 Registration number	어획물 중량(㎏) Weight(㎏) of catches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위 표를 별지로 첨부합니다.
If there are more vessels to fill in, the table above may be annexed.

6. 수출자 성명/서명/연락 정보 Exporter name/Signature/Contact details

7. 당국 승인 Valid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성명/직위 Name/Position	서명 Signature	날짜 Date of validation	날인 Seal(stamp)

수입자 성명 및 연락 정보 Importer name and contact details	※ 이송정보 Transport details	
	선박명 및 기국 Vessel name and flag	컨테이너번호 Container number(s) 목록 첨부 List attached

210㎜×297㎜[백상지(80g/㎡)]

(작성 요령)

(instruction for completing simplified catch certificate)

본 서식은 기국 정부기관에 의해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어선으로서,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인 경우에만 해당 This form only applies to a registered fishing vessel managed by a government authority of a flag state an measured less than 20GT.

1. 발급번호 : 해당 국가에서 부여하는 어획증명서 발급 번호를 기재합니다.

- 발급번호는 각 국가에서 결정하며, 승인당국이 작성합니다.

1. issuance number : the validating authority of the flag state of a fishing vessel produces an issuance number and fills in the blank for no. 1.

2. 승인당국 :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승인당국이 작성합니다.

2. validating authority : the validating authority of the flag state of a fishing vessel enters the name, address and contact details of the issuing authority of a catch certificate.

<3~6까지는 수출자가 작성 주체이며, 소형선박의 선장과 공동으로 작성합니다.>

<an exporter and a master of a small-scale fishing vessel jointly fill in the blank from no. 3 to no. 6 >

3. 어종 : 어획증명서 발급 대상 어획물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3. species: fill in the name of the species of fish and/or fishery products subject a catch certificate.

4. 중량 : 수출되는 어획물의 중량(kg)을 기재한다.

4. weigh(kg)t: fill in the weight of fish and/or fishery products subject to a catch certificate in kilograms.

5. 어획물을 제공하는 소형선박 목록과 선박별 중량 : 어획물을 제공하는 소형선박별 이름, 등록번호, 수출되는 어획물의 중량을 기재합니다.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첨부합니다.

5. list of small-scale fishing vessels that provided catches and catches weights by each vessel : fill in the name and the registration number of the small-scale vessel which provides catch, and the weight of the catch to be exported per vessel. If there are more vessels to fill in, a table which contains information thereof may be annexed.

6. **수출자 성명 및 연락 정보** : 수출자의 이름, 서명, 연락 정보를 기재합니다.

6. exporter name and contact details: Fill in the name, the signature and the contact information of an exporter.

7. **당국 승인** : 승인권자의 성명·직위 및 승인날짜를 기록하고 서명한 후 승인당국의 stamp를 날인합니다.

- 승인당국이 작성합니다

7. validation by a competent authority: the validating authority of the flag state of a fishing vessel fills in the name and the position of an endorsing official and the date of validation. The validating official puts an official stamp or seal.

(수입자 정보 및 이송정보 작성 요령) - 수출자가 작성합니다.

(instruction to fill in the entries relevant to an importer and transport details) - an exporter fills in

○ **수입자 성명 및 연락 정보** : 수입자의 이름 또는 상호명 및 연락 정보를 기재합니다.
importer name and contact details: Fill in the name of an importer or an importing company and contact information.

○ **선박명 및 기국** : 수출되는 어획물이 실린 운송선박명 및 선박의 국적을 기재합니다.
vessel name and flag state : fill in the name of a vessel which has onboard fish and/or fishery products to be exported and the flag state thereof.

○ **컨테이너번호 :**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 번호와 그 리스트를 첨부합니다.
container number : fill in the number of containers on board a ship and, if necessary, attach the list of the number of containers to a catch certificate.

참고 3 수출국 기관정보 서식

Information on Competent Authorities of Flag State for Validation of Catch Certificate

1. Name of Country :

2. Validation Authorities :

3. Authorities Empowered to Sign the Certificate

① Office name	② Address
③ Telephone number	④ Fax number
Competent Officials	
⑤ Name	⑥ Job title(position)
⑦ Signature	⑧ Official seal of the competent authority

참고 4 서아프리카 민어류(긴가이, 영상가이석태) 수입 동향

연도별 / 수입국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고('16 수입량 비중)
	중량(톤)	금액(천$)	중량(톤)	금액(천$)	중량(톤)	금액(천$)	중량(톤)	금액(천$)	중량(톤)	금액(천$)	
합 계	5,521	7,984	8,189	1,5876	9,519	20,160	14,171	34,083	17,633	57,405	100.0
(긴가이석태)	4,249	5,764	5,067	8,194	5,803	11,079	7,663	17,586	8,786	27,524	
(영상가이석태)	1,272	2,220	3,122	7,682	3,716	9,081	6,508	16,497	8,847	29,881	
기 니	4,548	6,089	5,401	8,925	5,702	10,446	9,369	20,369	11,227	33,770	63.7
(긴가이석태)	3,875	5,280	4,006	6,295	4,189	7,683	5,941	12,845	6,470	18,867	
(영상가이석태)	673	809	1,395	2,630	1,513	2,763	3,428	7,524	4,757	14,903	
시에라리온	439	442	1,459	2,536	1,933	3,723	2,383	6,235	3,357	11,527	19.0
(긴가이석태)	313	333	947	1,572	1,193	2,286	1,329	3,672	1,606	5,689	
(영상가이석태)	126	109	512	964	740	1,437	1,054	2,563	1,751	5,838	
세네갈	411	1,148	1,220	4,151	1,292	4,465	1,328	5,540	1,124	4,259	6.4
(긴가이석태)	61	151	78	273	95	356	110	408	197	709	
(영상가이석태)	350	997	1,142	3,878	1,197	4,109	1,218	3,804	927	3,550	
앙골라	-	-	-	-	269	746	514	1,500	589	2,430	3.4
(긴가이석태)	-	-	-	-	175	518	127	413	195	915	
(영상가이석태)	-	-	-	-	94	228	387	1,087	394	1,515	
모리타니	-	-	17	53	107	404	334	1,309	484	1,973	2.7
(긴가이석태)	-	-	-	-	-	-	-	-	-	-	
(영상가이석태)	-	-	17	53	107	404	334	1,309	484	1,973	
감비아	-	-	-	-	17	35	54	156	360	1,622	2.0
(긴가이석태)	-	-	-	-	11	26	1	2	59	309	
(영상가이석태)	-	-	-	-	6	9	53	154	301	1,313	
기니비사우	93	237	39	59	160	238	188	299	293	1,223	1.6
(긴가이석태)	-	-	36	54	139	207	155	246	257	1,026	
(영상가이석태)	93	237	3	5	21	31	33	53	36	197	
스페인	13	33	28	109	10	35	1	3	85	240	0.5
(긴가이석태)	-	-	-	-	-	-	-	-	1	2	
(영상가이석태)	13	33	28	109	10	35	1	3	84	238	
라이베리아									65	214	0.4
(긴가이석태)									1	7	
(영상가이석태)									64	207	
중국	-	-	-	-	8	29	-	-	27	95	0.2
(긴가이석태)	-	-	-	-	1	3	-	-	-	-	
(영상가이석태)	-	-	-	-	7	26	-	-	27	95	
모잠비크	17	35	25	43	21	39	-	-	22	52	0.1
(긴가이석태)	-	-	-	-	-	-	-	-	-	-	
(영상가이석태)	17	35	25	43	21	39	-	-	22	52	

* 식약처 검사통과 기준

참고 5 북태평양 꽁치 수입 및 수급 동향

□ 수입 동향

<단위 : 톤>

연도별 / 수입국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고 ('16 수입량 비중)
합 계	**51,530**	**53,059**	**45,980**	**56,246**	**59,597**	**42,075**	100.0
대 만	51,262	51,501	44,162	50,673	56,465	38,302	**91.0**
바누아투	-	-	-	4,731	2,955	3,295	**7.9**
캄보디아	-	-	-	331	135	-	
중 국	-	4	15	218	38	89	0.2
일 본	268	1,554	1,803	230	4	-	
러 시 아	-	-	-	-	-	389	0.9

* 관세청 통관 기준

□ 수급 동향

<단위 : 톤>

연도별	공 급			합 계	수 요	
	연근해	원 양	수 입		국내소비	수 출
'11	2,691	17,692	51,530	71,913	64,562	7,351
'12	2,431	13,961	53,059	69,451	61,197	8,254
'13	3,300	20,055	45,980	69,335	59,013	10,322
'14	320	23,431	56,246	79,997	70,799	9,198
'15	573	11,204	59,597	71,374	61,927	9,447
'16	890	16,855	42,075	59,820	52,194	7,626

참고 6 2017년 서아프리카 연안국 ODA 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금 액		사업명	국 가	수행기관
10.15	2.00	연안개도국 해양수산 기술 및 정책연수교육	7개국(미정)	해외어업협력센터
	4.40	수산 인프라 지원 및 관리기술 이전	세네갈	해외수산협력원
	3.75	선원학교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旣공여선박 활용)	세네갈	KMI 한-스페인
자료 : 1. '제6차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협의회' 자료집, 해양수산부(2014.12) 2.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참고 6-1 수산 ODA 물자지원 실적 (2006~2016)

□ 총 13개 국가, 1개 국제기구

(단위 : 천원)

수원국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합계
기니	26,321	71,156	58,388	76,851	89,483	119,555	94,051	108,458	133,073	57,000		834,336
기니비사우	26,321	27,357	60,845	74,536	89,392	66,628	96,729	109,229	152,693	72,035		775,765
세네갈							88,976	110,496	122,676	101,540	150,000	423,688
앙골라	11,106		28,830				96,674	103,182				239,792

참고 6-2 2018년 서아프리카 연안국 ODA 사업 추진계획(안)

□ 사업명 : 세계은행(WB) 협력사업 추진

□ 추진 배경

○ 세계은행(WB)과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아프리카 연안국의 MCS** (감시·통제·감독) **역량강화**

○ 서부아프리카의 IUU어업 축소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

□ 사업개요

○ (**총사업비/사업기간**) 23.5억원 / '18~'22년

○ (**사업수행**) 해양수산부(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

○ (**사업내용**) 서부아프리카의 연안국(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의 특성에 맞는 조업감시시스템 개발·지원하고 기술 및 경험 전수

□ 년도별 추진계획

○ (**'18년**) 서부아프리카 연안국* 통합 감시시스템 개발 : 809백만원

* 연안국 2개국(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의 특성에 맞는 조업감시시스템 개발 및 장비를 한국 조업감시센터에 설치

- IUU어업 시스템 구축 : 709백만원, 연간 운영비 : 100백만원

○ (**'19년**) 연안국(2개국)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755백만원

○ (**'20~21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매년 239백만원

○ (**'22년**) 시스템 운영 및 내구연한 도래 장비 교체 등 : 718백만원

참고 7 국가별 어획증명서 발급 담당기관 정보

국 가 명	기관명 및 연락처
기 니	(기관) DIRECTION NATIONALE DE LA PECHE MARITIME
	(전화) +224-657-982-878 (팩스) +224-621-042-758
대 만	(기관) Fisheries Agency, Council of Agriculture, Executive Yuan
	(전화) 886-2-23835678 (팩스) 886-2-23327396
대 한 민 국	(기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FMC)
	(전화) 051-410-1405 (팩스) 051-410-1409
모 잠 비 크	(기관) National Fisheries Administration
	(전화) +258 21 358000 (팩스) +258 21 320335
바 누 아 투	(기관) Fisheries Department
	(전화) (팩스)
세 네 갈	(기관) DIRECTION DE LA PROTECTION ET DE LA SURVEILLANCE DES PECHES
	(전화) +221-33860-2465 (팩스)
스 페 인	(기관) SUBDIRECCIOÑ GENERAL DE CONTROLE INSPECCIOÑ
	(전화) +34-91-347-1949 (팩스) +34-91-347-1512
시에라리온	(기관) Ministry of Fisheries and Marine Resources
	(전화) +232-76-619641 / +232-76-619276 (팩스)
앙 골 라	(기관) DIRECCAO NACIONAL DE PESCAS E PROTECCAO DE RECURSOS PESQUEIROS(DNPPRP) - Ministry of Fisheries
	(전화) 0023442222310199 (팩스)
일 본	(기관) Fisheries Agency
	(전화) +81-3-3502-1961 (팩스) +81-3-3508-1357
중 국	(기관) Bureau of Fisheries, Ministry of Agriculture
	(전화) +86-10-59192973 (팩스) +86-10-59192951

* Thank you *